



음성출력용비

서울가정법원

제 부

판 결

사 건 2015드합 (본소) 이혼 등
2015드합 (반소) 이혼 및 재산분할

원고(반소피고)

주소 서울

송달장소 서울

등록기준지 서울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산경

담당변호사 이석형, 이소정

피고(반소원고)

주소 서울

등록기준지 서울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

담당변호사

변 론 종 결

판 결 선 고





주 문

1. 반소에 의하여,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는 이혼한다.
2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위자료로 [] 원 및 이에 대하여 [] 부터 []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 이혼 청구, 피고(반소원고)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.
4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에게 재산분할로 []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5.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.
6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본소 :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와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는 이혼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 중 1/2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반소 : 주문 제1항,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[]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[] 원 및 [] 부터 원고가 사망하기 전 날